## ◉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-12호

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,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05월 08일

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
## 수입식품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(제2023-12호)

1. 처분대상

| 업체명<br>(업종) | 대상 | 소재지 |
|---|---|---|
| 송대리<br>(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) | 대표자 송*근 |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로14길 8, 104동 1003호(다사역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) |

2. 처분사항

○ 과태료 30만원(납부기한: 2023. 5. 31.) ※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20% 감경 가능

*납입고지서는 대구식약청 운영지원과(053-589-2707)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3. 처분사유

○ 수입식품 안전교육 명령 미이행(이수기한: 2022.12.13.)

4. 근거법령

○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6조(교육명령)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

○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제46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[별표2] 과태료의 부과기준 2. 개별기준 라목

5. 기타사항

○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라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가.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

나.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

다.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

라.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

○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에 따라 과태료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 문의: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(Tel : 053-589-2707, Fax : 053-592-2709, E-mail : adkeynes@korea.kr)